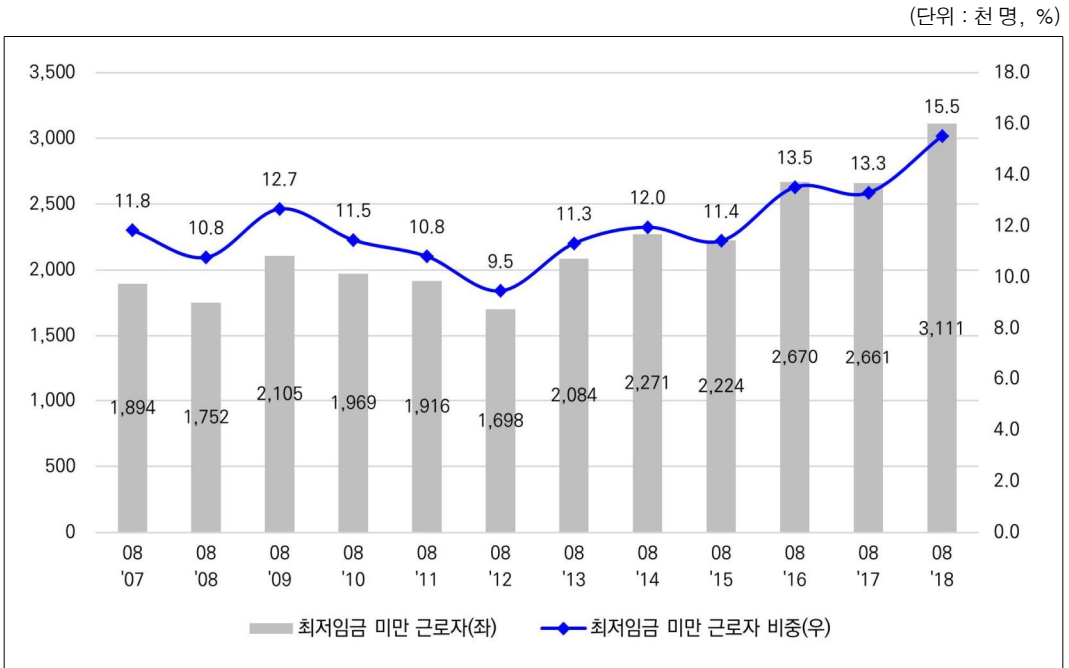


최저임금 미만율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

-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.4%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임금(7,530원)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,111천 명으로 전년대비 증가함.
 - 통계청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(8월)」를 이용하여 살펴보면,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9천 명 증가(2017년 263천 명 증가)에 그친 반면,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450천 명 증가하여 최저임금 미만율(15.5%)은 큰 폭(2.2%p)으로 상승함.

[그림 1]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및 비중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(8월)」, 각 연도.

1)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(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/(평소 1주당 근로시간*30.4/7))이 해당연도의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고, 최저임금 미만율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임.

-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근로조건²⁾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.

○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분포는 산업의 성격과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관찰되며, 그 결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산업별로 편차가 큼(표 1 참조).

〈표 1〉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

(단위 : 천 명, %)

| | 2017 | | | 2018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임금 근로자 |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| 최저임금 미만을 | 임금 근로자 |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| 최저임금 미만을 |
| 농림어업 | 122 | 52 | 42.8 | 115 | 46 | 40.4 |
| 제조업 | 4,018 | 204 | 5.1 | 3,941 | 272 | 6.9 |
| 전기·가스·증기 | 67 | 2 | 2.2 | 71 | 0 | 0.4 |
| 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 | 107 | 4 | 3.4 | 124 | 10 | 7.8 |
| 건설업 | 1,513 | 111 | 7.3 | 1,584 | 170 | 10.7 |
| 도매 및 소매업 | 2,321 | 420 | 18.1 | 2,251 | 486 | 21.6 |
| 운수 및 창고업 | 783 | 107 | 13.6 | 791 | 124 | 15.7 |
| 숙박 및 음식점업 | 1,448 | 499 | 34.5 | 1,362 | 586 | 43.1 |
| 정보통신업 | 718 | 11 | 1.5 | 784 | 23 | 2.9 |
| 금융 및 보험업 | 758 | 28 | 3.6 | 804 | 43 | 5.4 |
| 부동산업 | 366 | 80 | 21.8 | 356 | 76 | 21.5 |
|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| 901 | 19 | 2.2 | 925 | 32 | 3.4 |
|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| 1,306 | 246 | 18.9 | 1,193 | 251 | 21.0 |
| 공공행정 | 1,103 | 149 | 13.5 | 1,131 | 156 | 13.8 |
| 교육서비스업 | 1,538 | 118 | 7.6 | 1,505 | 128 | 8.5 |
|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| 1,852 | 309 | 16.7 | 1,998 | 348 | 17.4 |
|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| 273 | 73 | 26.7 | 289 | 74 | 25.6 |
| 협회 및 단체, 기타개인 | 722 | 191 | 26.4 | 756 | 256 | 33.9 |
| 전 체 | 20,006 | 2,661 | 13.3 | 20,045 | 3,111 | 15.5 |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(8월)」, 각 연도.

2) 통계청의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(8월)」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회보험 가입률(국민연금 가입률, 고용보험 가입률, 건강보험 가입률)과 복지혜택 수혜율(퇴직금 수혜율, 상여금 수혜율, 유급휴가 수혜율, 시간외수당 수혜율)임.

-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(43.1%), 도매 및 소매업(21.6%),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(21.0%)인 반면, 정보통신업(2.9%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3.4%)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상당히 낮음.
 -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,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86천 명 감소한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전년동월에 비해 크게 증가(88천 명 ↑)하였으며, 주로 임시직(67천 명 ↑), 남성보다는 여성(71천 명 ↑), 그리고 5인 미만(68천 명 ↑) 소규모 사업체에서 증가함.
 - 숙박 및 음식점업과 함께 대표적인 내수 의존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도 임금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70천 명 감소한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6천 명 증가하였는데, 임시직뿐만 아니라 상용직도 41천 명(40세 이상 연령층에서 30천 명 ↑) 증가함.
 -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 역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산업으로,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증가로 전환함(2018년 5천 명 ↑, 2017년 27천 명 ↓). 이는 임시직, 여성,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증가 전환한 영향이 큼.³⁾
- [그림 2]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, 도매 및 소매업, 사업관리지원임대,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나 복지와 같은 근로조건이 제조업과 전산업 평균에 비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음.⁴⁾
-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은 임금근로자의 약 40% 내외만이 국민연금, 고용보험,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, 복지혜택 또한 전 항목이 평균수준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.
 - 다만,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(2.2%p ↑), 고용보험 가입률(1.9%p ↑), 건강보험 가입률(2.6%p ↑), 퇴직금 수혜율(3.9%p ↑), 시간외수당 수혜율(0.5%p ↑)이 2017년보다 증가하여, 최저임금 미만율은 높아졌으나 근로조건 지표들이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.⁵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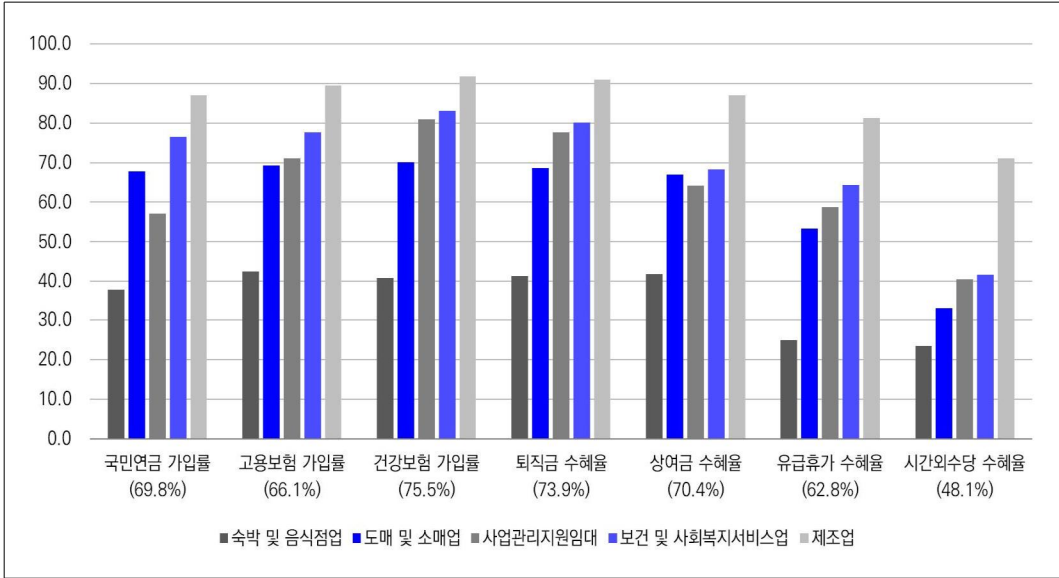
3) 임시직(2018년 6천 명 ↑, 2017년 12천 명 ↓), 여성(2018년 8천 명 ↑, 2017년 29천 명 ↓),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(2018년 12천 명 ↑, 2017년 17천 명 ↓)에서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환함.

4)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63.1%(2018년)가 비정규직이며, 이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확인됨.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, 정규직 역시 다른 산업들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혜택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데, 이에 더해 비정규직은 대부분의 근로조건 지표에서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임.

5) 이는 전산업 평균보다 개선폭이 큰 편임. 2018년 전산업 기준 사회보험 가입률 및 복지혜택 수혜율은 전년동월대비 국민연금 가입률 0.7%p, 고용보험 가입률 0.4%p, 건강보험 가입률 1.3%p, 퇴직금 수혜율 1.3%p, 시간외수당 수혜율 0.4%p 상승함.

[그림 2] 산업별 임금근로자⁶⁾의 사회보험 가입률 및 복지수혜율

(단위 : %)



- 주 : 1)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률은 직장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함.
- 2) 고용보험 가입률은 “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별정우체국 직원”은 제외된 수치임.
- 3) () 안은 전산업 평균임.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(8월)」, 각 연도.


– 서비스업에 비해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혜택 수혜율은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하고, 전년에 비해 고용보험 가입률이 0.4%p 감소한 것 외에 다른 근로조건 지표들은 모두 개선됨.

○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고용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임시직(60.1%), 여성(62.2%),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(41.1%)에 집중되어 있음.⁷⁾

-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임시적인 경우 약 15%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, 이들의 여타 근로조건 지표⁸⁾들도 낮은 수준임.
-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처우를 받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정 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꾀하고자

6) 전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, 숙박 및 음식점업(57.6%), 도매 및 소매업(84.3%), 사업관리지원임대(77.6%),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78.7%) 임금근로자의 상대임금은 전산업 평균수준보다 낮고, 제조업(117.3%)은 평균수준 이상임(2018년 기준).

7) 최저임금 근로자 중 100~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3.4%,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비중은 1.9%에 불과함.

하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, 철저한 관리·감독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 또한 제고되어야 할 것임. 

(이기쁨, 동향분석실 연구원)

8) <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임시직, 여성,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>

| | 사회보험 가입률(%) | | | 복지혜택 수혜율(%)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| 국민연금 | 고용보험 | 건강보험 | 퇴직금 | 상여금 | 유급휴가 | 시간외수당 |
| 전산업 평균 | 69.8 | 66.1 | 75.5 | 73.9 | 70.4 | 62.8 | 48.1 |
| 임시직 | 14.8 | 21.4 | 22.5 | 17.2 | 23.6 | 5.9 | 8.1 |
| 여성 | 23.9 | 29.8 | 30.7 | 29.0 | 30.8 | 14.9 | 12.7 |
| 5인 미만 사업체 | 13.4 | 17.9 | 18.3 | 17.8 | 26.5 | 8.4 | 7.6 |